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20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박수영 · 서천호 · 김민전
곽규택 · 김재섭 · 안철수
김 건 · 박성훈 · 최은석
유상범 · 조은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금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 ③ (생 략)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 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 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연금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u> <u>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u> <u>충당부채에 관한 분석보고서</u>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